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허종식 · 박 정
이연희 · 임미애 · 서왕진
박용갑 · 이수진 · 전진숙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,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,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,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) 중 더

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이행강제금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
2.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

관, 이의제기 방법,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, 부과·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·징수하지 못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3항, 제14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이행강제금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u> <u>1.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</u> <u>2.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</u> <u>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</u>

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,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, 부과·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·징수하지

못한다.